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내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국내 플랫폼의 관련 명세의 분기별 제출 의무를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